

상수도직직원관리규정

제정 2016. 7.20 규정 제827호
개정 2017. 3.10 규정 제849호
2018. 4. 3 규정 제924호
2018. 6.21 규정 제93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사규정 제4조의 상수도직 직원의 고용과 처우, 복리후생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상수도직 직원의 고용 및 인사관리 등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수도직 직원”이라 함은 공단에 고용된 상하수도 계량기 교체 및 검침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2. “교체원”이라 함은 상하수도 계량기 교체 및 신설, 폐전계량기를 철거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3. “검침원”이라 함은 상하수도 계량기 검침과 검침에 수반된 업무처리, 고지서 및 안내문 등 제반 송달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와 관련된 사무를 보조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4조(직급구분 등) ① 상수도직 직원의 직급 및 직급명은 인사규정에 준한다.

② 상수도직 직원의 직렬은 상수도 직렬, 직종은 교체원은 교체 직종, 검침원은 검침 직종으로 한다.

제2장 인사

제5조(정년) 상수도직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정년산정 기준일은 입사 시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 하고, 정년퇴직일은 당해연도(만60세)의 12월 31일로 한다.

제6조(신분보장) 상수도직 직원의 신분보장은 인사규정 제28조를 준용하되 서울시 상하수도 계량기 교체 및 검침 업무 대행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공단과의 고용관계도 종료된다.

제7조(채용) ① 상수도직 직원의 채용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시행내규를 준용한다.

② 상수도직 직원의 신규채용 연령은 18세 이상으로 하되 상한 연령은 정년 범위내로 한다.

제8조(수습기간) ① 상수도직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며 수습기간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아니한다.

1. 근무성적이 불량할 때
2. 공단의 제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 될 때

제9조(급호부여) 상수도직 신규 채용 직원의 직급은 9급으로 하고 초임호봉은 공단 입사 전 경력과 상관없

이 입사 시점부터 1호봉을 부여한다. 단, 사병 의무 복무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내에서 균경력을 인정한다.

제10조(승진) 직원의 승진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전직 및 전보제한) 상수도직 직원은 타 직렬로 전직할 수 없으며 공단내 타사업장으로 전보할 수 없다.

제12조(근무지조정) 이사장(해당 본부장 및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기 또는 수시로 근무지를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표창 및 징계) 상수도직 직원에 대한 표창 및 징계에 관한사항은 인사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근무성적 평정) 근무성적 평정에 관하여는 인사규정을 준용하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보수 및 퇴직금

제15조(보수) ① 보수의 정의는 보수규정 제2조에 의한다.

② 상수도직 직원의 보수는 예산 범위내에서 별표1의 기준에 따라 매 회계연도 초에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여 지급한다.

③ 보수 지급일은 매월 20일로 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

④ 공단에서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1. 시간외근무수당 2. 휴일근무수당 3. 야간근무수당
- 4. 연차수당 5. 상여수당 6. 가족수당
- 7. 장기근속수당 8. 삭제<2018.6.21.>

⑤ 신분변경 및 결근시의 보수는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시행내규를 준용한다.

제16조(계산기간) 보수의 계산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의 계산은 당월에 지급하되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익월 급여에서 정산한다.

제17조(호봉승급기간 및 승급제한) ① 직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직원의 정기 호봉승급시기는 매월 1일자로 한다.

③ 직원이 호봉급의 최고호봉에 도달하였을 때에는 승급하지 아니한다.

제18조(퇴직금) ① 상수도직 직원의 퇴직시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임원및직원퇴직금규정에 의한다.

② 상수도직 직원의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된 임금 총액을 월평균한 금액으로 하고 평균임금의 범위는 기본급 및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 1. 시간외근무수당 2. 휴일근무수당 3. 야간근무수당
- 4. 연차수당 5. 상여수당 6. 가족수당

- 7. 장기근속수당 8. 삭제<2018.6.21.> 9. 급식보조비
- 10. 삭제<2018.6.21.> 11. 효도휴가비

제4장 복지후생

제19조(복리비 등) 상수도직 직원의 복지후생을 위한 복리비 등의 지급은 다음과 같으며 지급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 1. 급식보조비 2. 삭제<2018.6.21.> 3. 효도휴가비 4. 선택적 복지비

제20조(학자금 지원 및 보조) ①공단은 예산범위 내에서 직원자녀에게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1. 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 : 학자금 보조 (지원한도액:정부고시금액)
- 2. 대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 : 학자금 용자 (공단 재직기간 2년 이상자)
- ② 학자금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복지후생규정을 준용하고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건강진단) 상수도직 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제22조(제보험 등) 공단은 상수도직 직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한다.

제23조(피복지급) 피복지급에 관한 사항은 피복지급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복무

제24조(근무시간 및 복무) 직원의 근무시간 및 복무 시 준수사항 등은 취업규칙을 준용한다

제25조(시간외 근무) 직원은 업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연장, 야간 및 휴일근무를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지급 또는 휴무를 부여 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6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단 규정과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7조(지급의 특례) 이 규정에 의한 제반 사항의 시행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야 한다.

부 칙(2016.7.20.)

-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 ②(경력산정 경과규정) 제9조(급호부여)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교체원 및 검침원 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채용한 직원에 한하여는 2017년 7월 1일부터 사병 의무복무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서 준경력을 인정한다.
- ③(채용·수습기간 특례) 서울특별시 교체원 및 검침원 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채용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2017.3.1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4.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1. 직원 기본급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6.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제15조 관련) <개정 2017.3.10, 2018.4.3, 2018.6.21.>

직원 기본급표(2018.1.1.부 적용)

(단위 : 원)

직급	본봉	직무급	계	호 봉 급			
				호봉	금액	호봉	금액
1급	1,320,300	1,113,000	2,433,300	1	397,200	19	1,139,500
2급	1,258,800	877,700	2,136,500	2	439,700	20	1,177,100
3급	1,205,900	725,800	1,931,700	3	480,700	21	1,216,200
4급	1,159,000	597,600	1,756,600	4	523,200	22	1,257,200
5급	1,111,900	421,600	1,533,500	5	567,200	23	1,296,300
6급	1,031,900	252,100	1,284,000	6	609,700	24	1,338,800
7급	950,200	242,400	1,192,600	7	654,100	25	1,379,600
8급	644,400	204,600	849,000	8	694,700	26	1,419,100
9급	562,700	193,300	756,000	9	737,400	27	1,454,600
				10	778,200	28	1,486,800
				11	821,700	29	1,515,700
				12	861,400	30	1,541,600
				13	902,400	31	1,565,200
				14	943,200	32	1,585,200
				15	984,100	33	1,605,200
				16	1,025,000	34	1,625,200
				17	1,062,600	35	1,645,200
				18	1,100,200	36	1,665,200

제수당 지급기준표

수당별	지급률 및 지급액	비 고
1. 시간외 근무수당	$\frac{1.5}{209} \times \text{통상임금} \times \text{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범위안에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다 · <u>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수규정시행내규 제7조를 준용한다.</u>
2. 휴일근무수당	$\frac{1.5}{209} \times \text{통상임금} \times \text{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범위안에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다 · <u>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수규정시행내규 제7조를 준용한다.</u>
3. 야간근무수당	$\frac{0.5}{209} \times \text{통상임금} \times \text{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범위안에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다
4. 연차근무수당	$\frac{1}{209} \times \text{통상임금} \times \text{시간}$ X 미사용연차일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다.
5. 상여수당	기본급의 400% 이내(평가급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수규정시행내규 제7조를 준용한다.
6. 가족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수규정시행내규 제7조를 준용한다.
7. 장기근속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 이상 근속자 : 월 80,000원 · 15년 이상 근속자 : 월 60,000원 · 10년 이상 근속자 : 월 50,000원 · 5년 이상 근속자 : 월 4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근속수당 지급은 입사일로부터 기산하되, 3년 이내의 군복무기간을 포함한다.
8. 보전수당 < 삭 제 >		